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9.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고,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 보내는 기관 [] 받는 기관							
보내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 병원체의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받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 병원체의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 병원체	일련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이동 예정일	수송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1부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기관이 신고자가 되며, 이 경우 신고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